

季 志

하수도 배수관 설치 시 전문시공업체에 위탁 의무화 공정한 시공업체 선정 책임 시공돼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도시개발로 인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정되는 법률 시행일로부터 3년 이전에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일제히 변경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하수배수관 중 대지경계선 바깥은 시장·군수가 유지관리 책임 담을 건설하거나 도시개발 할 때 하수도정비계획도 변경

환경부는 건축주가 하수배수관을 설치할 때 전문시공업체에 위탁시공하여야 하는 등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수배수관을 설치할 때 빗물관과 오수관을 잘못 연결하거나, 해수관끼리 이음부분의 밀봉부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시공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시공업체에 위탁시공 해야한다. 아울러 개별 건축주가 설치한 하수배수관중 대지 경계선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시장·군수가 개축·수선 및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도시개발로 인한 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정되는 법률 시행일로부터 3년 이전에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일제히 변경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또한,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도 댐의 담수시기 이전에 댐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을 설치·자동시키기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6월 20일까지 페스나 이메일로 의견을 받은 후 공청회를 통해 관련사람들을 알리고 시행하게 된다.

공정한 업체선정 → 책임시공 → 철저한 관리감독

이번 하수도법령 개정계획에 대해 학계나 산업체는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들을 밝히고 있다. 물론 기존의 방법에 비해 전문시공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수관의 무분별한 시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하수배출시설(아파트, 상가 등)이 들어서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에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관의 파손이나 오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다.

그러나 이 법령이 발효되면 전문시공업체가 책임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문제발생시 책임추궁도 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한다. “누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이며, 선정된 전문시공업체가 책임감 있게 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전문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이나 비리 없이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업체를 평가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할 구청에서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한 방법으로 업체선정을 관련 공무원이 아닌 한국상하수도협회나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보여진다.

하수도 관련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이러한 법령을 이미 시행중이고 미국은 주(州) 단위로 시행여부에 차이가 있다. 중요한 점은 법령의 시행이 아니라 책임시공이다. 선진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제도의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시공이 일반화되어 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일본의 관로 폐설 책임현장

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나 뇌물로 공사를 수주해내고 부실공사로 공사비를 청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다.

이번 법령의 개정과 밸맞추어 책임시공하는 업체가 정당한 가격으로 공사를 맡아 수행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든 관계자들이 협조해 우리나라의 하수관거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국수자원환경학회 홈페이지



열려있는 정보의 향!!

www.kwwa.or.kr